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책 마련〉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7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1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4
IV . 검토의견	7
1. 총괄	7
가.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취지	7
나. 신규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11
다.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비교	14
2.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목적 및 기본원칙 등 (박해철의원안 제1조·제3조·제17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1조·제3조)	17
나. 정의(박해철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 제2조)	22
다. 국가 등의 책무 등(박해철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 제4조· 제5조)	31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박해철의원안 제7조·제8	

조·제14조·제15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7조·제8조·제15조·제16조)	34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상담 등(박해철의원안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윤준병의원안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	41
바.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및 피해자단체 (박해철의원안 제11조 및 윤준병의원안제11조·제12조)	45
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박해철의원안 제16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17조)	52

I. 제안경위

1. 박해철의원안

2024년 6월 19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윤준병의원안

2024년 7월 11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1. 박해철의원안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

도하고 있음.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결국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다 죽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워라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사 등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2. 윤준병의원안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Ⅲ. 주요내용

1. 박해철회원안

-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살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2. 윤준병의원안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과로사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개념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 국가 등의 책무, 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상 시행계획을 수립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가.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취지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국가 34개국¹⁾ 중 6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

(단위: 시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멕시코(1위)	2,228	2,207	2,216	2,226	2,207
한국(6위)	1,967	1,908	1,910	1,901	1,872
캐나다(7위)	1,691	1,653	1,685	1,686	1,865
미국(9위)	1,817	1,789	1,813	1,804	1,799
이탈리아(13위)	1,710	1,543	1,686	1,726	1,734
스페인(18위)	1,678	1,558	1,633	1,652	1,632
일본(22위)	1,644	1,597	1,607	1,607	1,611
영국(24위)	1,537	1,364	1,498	1,531	1,524
프랑스(25위)	1,518	1,400	1,475	1,501	1,500
스웨덴(29위)	1,453	1,426	1,447	1,440	1,437
독일(34위)	1,373	1,316	1,348	1,347	1,343
OECD 평균	1,764	1,683	1,739	1,746	1,742

* 괄호 안은 2023년 기준 순위임.

자료 : OECD Stat(검색일 : 2024.8.9.).

1)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4개국 제외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 중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명시하고 있고,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음.³⁾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음.⁴⁾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 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여 산업재해로 보상받기 어려운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64.7%) 및 기타질병(55.0%) 대비 뇌심혈관질병(33.2%)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인정률 또한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4)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 | |
|--|
| <p>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p>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p>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p> |
|--|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연도별·질병별 판정현황 >

※ 판정위 결재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정건수	인정률	인정건수	인정률	인정건수	인정률	인정건수	인정률	인정건수	인정률
뇌심혈관	1,265	41.1	929	38.2	889	38.6	674	34.5	703	33.2
근골격계	6,844	71.9	6,827	68.3	7,764	66.6	7,601	65.7	8,586	64.7
기타질병	1,064	66.3	1,329	66.7	1,730	69.6	2,561	69.2	1,728	55.0
계	9,173	64.6	9,085	63.0	10,383	63.2	10,836	62.9	11,017	59.5

* 기타질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레이노증후군, 직업성암, 정신질병, 세균성질병, 간질환 등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2023년도 심의현황 분석”, 2024.1.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사 등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신규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2건의 제정안은 ‘과로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규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률에 관련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의 일부개정의 방식으로, 기존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새롭게 규율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사용됨.⁵⁾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의 사후조치와 관련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사용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과로사 등의 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⁶⁾ 규정하

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98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10면.

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

고 있음.

다만, 이들 규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직접적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지원·지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국가의 책무만이 규정되어 있는바,⁷⁾ 2건의 제정안은 기존 법률체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로사 등

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7)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예방과 관련한 의무를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임.

따라서 향후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국민의 법 이해 측면에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고용노동부는 특별법은 사회환경 변화 등 기존 법·제도로는 담기 어려운 입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법률의 정비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의 정비를 통해 이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바, 현행 법률에서 과로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과로사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는 해외사례는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 예방과 관련한 규정 등으로써 간접적으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過勞死等防止對策推進法)」을 참조

다.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비교

두 건의 제정안은 모두 4장 17조의 조문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두 제정안은 제1장 총칙에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원칙(제3조)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을 규정하며, 제3장 과로사등 예방대책(박해철의원안)·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윤준병의원안)에 과로사등 실태조사(제9조),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박해철의원안)·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윤준병의원안)(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제4장 보칙에 국회에 대한 보고(제14조 및 제15조),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제16조 및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두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체계 하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①박해철의원안이 정의 조항에 ‘과로사’만을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 윤준병의원안은 이에 추가하여 ‘과로사등’, ‘근로자’, ‘사업주’의 정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②국가 등이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의무에 대하여 박해철의원안은 제17조에, 윤준병의원안은 기본원칙을 규정한 제3조제2항에 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③윤준병의원안은 박해철의원안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임.

<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장 총칙	목적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 방지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 (윤준병의원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	
	정의	“과로사” :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요인(질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	
		※ 별도 정의 조항 없음	“과로사등”, “근로자”, “사업주”를 정의
	기본원칙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 고가 이루어져야 함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며 국민의 관심 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유사한 내용을 제17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에 별도 규정	국가 등은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 치를 하여야 함
	국가 등의 책무	①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②공공기관·사업자·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국민과 사업자(사용자) 의 책무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로사등 예방 대 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예 방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	
제3장 과로사등 예방대책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	과로사등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 여 그 결과를 공표	
	조사·연구 등	정부는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예방 대책협의회)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로 사등 예방 협의회(예방대책협의회)를 둠 - 예방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	
	피해자단체	※ 별도 규정 없음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또 는 사망자의 유족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과로사등 발생시 의견 제출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구 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	
제4장 보칙	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등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	국가 등은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유사한 내용을 제3조(기본원칙) 제2항에 규정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원칙 등

(박해철의원안 제1조·제3조·제17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1조·제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인 장시간 노동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박해철·윤준병의원안)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윤준병의원안), 궁극적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박해철·윤준병의원안)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이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박해철의원안) 또는 법적·제도적 장치(윤준병의원안)의 마련과 국민의 이해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이 기본원칙임을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u>장시간 근로 및 질환</u>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u>방지하고</u>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법은 <u>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이하 “과로사등”이라 한다)</u>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u>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u>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u>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u>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 및 질환</u>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u>최소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은 <u>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과로사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u>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

이에 제정안 목적규정은 과로사, 장시간 근로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로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기본원칙 규정은 과로사등의 예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성 질환 및 과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목적규정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의 발생의 예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적인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제정안 기본원칙 규정은 이를 명시함으로써 과로사등의 예방이 국가적인 과제임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 제3조는 조 제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이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⁹⁾

기본이념·기본원칙 관련 참고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한편, 박해철의원안은 제17조의 별도 조문으로, 윤준병의원안은 기본원칙 조문의 제2항으로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실체적·구체적 의무는 아니나 동 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242면 : “기본이념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므로,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다음에 둔다. 조 제목으로는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도 사용되고 있는데, 가급적 ‘기본이념’으로 통일한다.”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 조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행정적·재정적 조치 관련 참고 입법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정의(박해철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 제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박해철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과로사”에 대하여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의 발생,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등의 요인·질환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함.

또한 윤준병의원안은 “과로사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업주”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요인으로 인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망(자살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 1.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u>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

박해철회원안	윤준병의원안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의 발생 2.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	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의 발생 나.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 <u>라.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의한 자살</u> 2. <u>“과로사등”이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말한다.</u> 3. <u>“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4. <u>“사업주”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

2) 검토의견

두 제정안은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근로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핵심 개념인 “과로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최근 택배기사, 경비원 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과로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로사”라는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병명 등 정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은 이를 감안하여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을 “과로성 질환”으로,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과로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과로사”로 각각 정의하고,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통틀어 “과로사등”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다만,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의 정의에 따라 법률에서 보호하는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를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제정안의 다

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체계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유무,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의 정도로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박해철의원안 제2조제1호 및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로성 질환”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등과의 연관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질환의 원인과 관계 없이 모든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을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은 “과로성 질환”의 정의에 대하여 제2조제1호 본문에서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제2조제1호가목에서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중복하여 정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1호 본문에서의 정의와 같이 규정할 경우 각각의 질환이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고, 신경정신계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유독성 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 또

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¹⁰⁾하고 있는 데 반해 두 제정안은 신경정신계 질병을 “과로성 질환”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박해철의원안 제2조제2호 및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1호나목은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로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외에도 다른 모든 질환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을 과로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펌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적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참고로,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은 “과로사 등”을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에 의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및 업무에 있어서 강한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또는 정신장애’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의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의 정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과로사의 법률상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6월 21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②“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제정안의 ‘기준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보게 되는 경우 모든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제정안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의조항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3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별도 정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¹¹⁾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해철의원

1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은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제2조 본문에서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윤준병의원안에 따른 근로자 범위보다는 넓은 범위로 해석됨.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¹²⁾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¹³⁾ 또는 ‘노무제공자’¹⁴⁾를 별도로 정의하여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별도의 근로자 정의¹⁵⁾를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음.

12)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 보험모집인(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골프장 캐디(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1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현행법 체계상 정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이 보호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이외에도 제정안 정의 조항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첫째,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1호라목은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의한 자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이라는 용어에 사망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중복되므로,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이를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의 발생’으로 정비하는 방안¹⁶⁾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둘째, 박해철의원안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제2조 정의 조항에 규정하면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과로사등”은 제3조 기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본원칙 조항에서 약칭¹⁷⁾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보호대상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 등 발생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제정안에 “과로사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2호와 같이 이를 정의 조항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4호는 “사업주”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윤준병의원안은 동 조문 외에는 “사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¹⁸⁾

17) 박해철의원안 제3조(기본원칙) 이 법은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이하 “과로사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8) “사업주” 및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국가 등의 책무 등

(박해철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 제4조·제5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 제4조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사업자(사용자)·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사업주 등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

또한 제정안 제5조는 국민과 사업자(사용자)의 책무로서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u>과로사등</u> 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대책(이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u>사업자</u> ·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u>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u> 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u>사용자</u> ·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u>사업주 등</u>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원할 수 있다</u>. 제5조(국민과 <u>사업자</u>의 책무) 국민과 <u>사업자</u>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원하여야 한다</u>. 제5조(국민과 <u>사용자</u>의 책무) 국민과 <u>사용자</u>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과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의 대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두 제정안은 제4조제3항에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

기준법」 제50조¹⁹⁾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²⁰⁾에서 실제적·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은 제4장 보칙에 규정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조문과 함께 별도의 규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윤준병의원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사업주 등에 대한 비용지원 의무화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해철의원안과 같이 개별적 사안에 따라 재정지원의 필요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²¹⁾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할 임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오

19)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257면

21) 일자리 함께하기(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유연근무제도 도입),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 재정사업 추진

히려 인력난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여지가 적은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 비용지원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²²⁾가 있다는 의견임.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박해철의원안 제7조·제8조·제14조·제15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7조·제8조·제15조·제1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추진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 정책 추진실적 및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임.

22)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7.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u>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 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u>업종별 근로시간과</u>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7.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u>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u>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u>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u>매년</u>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토의견

두 제정안은 제3조의 규정을 통해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에서도 점검하

도록 함으로써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제정안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²³⁾하는 등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근로문화 관행의 개선, 노사 및 국민들의 공감대와 인식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추진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박해철의원안의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추진실적의 보고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보고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음.

23) 주 52시간제 도입: (‘18.7.)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1.) 50~299인 → (‘21.7.) 5~49인

박해철의원안의 경우 시행계획을 모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진실적을 제출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을 규정한 것인바, 유사 입법례의 사례를 감안할 때 박해철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시행계획 수립·제출주체 관련 참고 입법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두 제정안은 ‘국회에 대한 보고’와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를 제4장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장인 제2장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조문위치 관련 참고 입법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생략)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상담 등(박해철의원안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윤준병의원안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과로사등의 발생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관련 통계를 수립·분석 및 관리하고 과로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9조(과로사등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과로사등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u>업종별 근로시간</u> 및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를」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조직구조·<u>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조직구조·<u>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과로사등이 근로자 및 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위해와</u>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과로사등 방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과로사 방지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홍보,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국가와 사회의 공동협력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①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재도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²⁴⁾ 및 통계²⁵⁾를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고 있으며, ②교육 등과 관련하여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²⁶⁾ 및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²⁷⁾을 실시하고 있고, ③상담 등과 관련하여 건강관리 취약계층 및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및 상담서비스와 자살·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
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 ▲근로환경조사(승인번호 제380002호): 3년 주기, 5만명, 가구조사

→ 업종, 직무, 고용형태, 근로시간, 야간·교대근무 및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승인번호 제380004호): 3년 주기, 7천개소, 사업장 조사

→ 고령자, 야간·교대근무,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건강진단 등 현황

25) 국가승인통계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분류기준에 따른 질병 재해자 통계 관리(산재발생현황, 승인번호 제118006호)

26) 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제출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

→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바.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및 피해자단체

(박해철의원안 제11조 및 윤준병의원안제11조·제1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박해철의원안)·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윤준병의원안)를 설치하는 내용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①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한편, 윤준병의원안은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과로사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단체로 하여금 협의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과로사등 발생시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1조(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제11조(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u>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이하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라 한다)</u>를 둔다. ②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 ③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근로자 및 <u>사업자</u>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u>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근로자 및 <u>사용자</u>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u> ⑤ 그 밖에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2조(피해자단체) 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과로사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과로사등 발생시 협의회의 심의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로사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정책 추진 관련 정부부처 등 다수가 참여하여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협의회는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고²⁸⁾,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중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인 바, 협의회 목적·기능 및 심의사항 등을 고려할 때 협의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민주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고, 공직자와 민간위원, 특정 이해관계를 대

28) 박해철의원안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 대책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준병의원안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할 수 있는 위원 등의 비율이 공정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⁹⁾

한편, 윤준병의원안은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과로사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단체로 하여금 협의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로사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반영하여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 있음.

29) 「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피해자단체 관련 참고 입법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특정³⁰⁾되고, 해당 법률은 이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제를 목적³¹⁾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윤준병의원안

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 피해자는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과로사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별도의 인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피해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제정안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피해자 단체의 구성 및 협의회 위원 추천권과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로사등의 예방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협의회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중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에 규정된 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및 동법 시행령33)에 따

3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적용·징수·급여·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

라 운영 중이므로, 과로사등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는 현행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³⁴⁾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³⁵⁾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

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3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임.

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박해철의원안 제16조 및 윤준병의원안 제17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16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과로사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는 민간단체의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자발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과로사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라는 이 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민간단체 활동 지원 관련 참고 입법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점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등이 자주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및 과로사 등이 본인은 물론 그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큰 손실인 점에 비추어,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과로사 등이 없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충실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과로사 등"이라 함은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에 의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및 업무에 있어서 강한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인한 사망 또는 이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①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가 반드시 충분히 파악되지 아니한 상황을 바탕으로,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를 밝히고, 그 성과를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국민의 자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상호 밀접한 연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전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와 협력하면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5조(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 ① 국민 간에 널리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자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을 둔다.

②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은 11월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

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강구한 시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원칙

제7조 ① 정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원칙(이하 이 조에서 간단히 “기본원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기본원칙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閣議)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기본원칙의 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④ 정부는 기본원칙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의 이용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전 3 항의 규정은 기본원칙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제8조(조사연구 등) ①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타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과로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이하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할 때에는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 또는 강한 심리적 부담을 받은 것과 관련된 사망 또는 상병(傷病)에 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의 임원 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널리 해당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제9조(계몽)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국민의 자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0조(상담체제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 및 그 친족 등이 과로사 등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 산업의 및 기타 과로사 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자에 대한 연수기회의 확보 등,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조기에 대응하고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체제의 정비 및 충실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의 단체가 수행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4장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제12조 제7조제3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다음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둔다.

제13조 ① 협의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에 의하여 내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걸린 자 또는 업무에 있어서 강한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신장애를 갖게 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 또는 이러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 또는 해당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전3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입각한 법제상의 조치 등

제14조 정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